

『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0년 5월 28일

나. 발 의 자 : 장세구, 강승수, 김재상, 김춘남, 송용자,
신문식, 이선우, 장미경 의원(8명)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6월 12일

제24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장 세 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현행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은 국책사업 추진과 국회 교육
참석 등 의원들의 국회출입 편의제공을 위하여 RF카드
(Radio Frequency Card)로 제작하며 국회 출입 시스템과 연동
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RF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
하고 각종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신분증에 RF카드 및 첨단기술 활용 등 편의 증진을 위한 별도 기능 추가 근거 규정 마련(안 제3조제2항)
- 별표 카드규격에 RF카드 사용 근거 명문화(안 별표 제7호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정

- 본 「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은
 - 전자 및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신분증 기능이 다양화되고 활용범위도 확대됨으로써 의원 신분증에 첨단기술 활용 등 편의증진을 위한 별도 기능 추가 근거규정 마련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RF카드 사용 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규칙개정에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